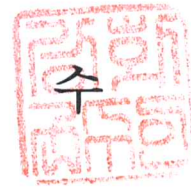
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불법시설물 자진철거(이전)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9일

강 화 군



1. 공고기간 : 2020. 6. 9. ~ 2020. 6. 26.(17일간)
2. 공고내용 :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자진철거(이전)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처분내용 및 대상자 현황

당사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반송사유
성 명	주 소			
이*철	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89번길	국유재산 무단점유(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98)	불법시설물 자진철거 (이전)명령	수취거절

5. 법적근거 :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 및 제74조
6. 의견제출

가. 제 출 처 : 강화군청 건설과(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)

나. 제출기한 : 2020. 6. 26.(금)까지

5. 기타사항

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나.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다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건설과(☎032-930-3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지적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